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창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

2297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4월 02일

발 의 자:김창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김태수, 박기열, 박기재,

박순규, 성흠제, 송정빈, 양민규, 이성배, 임종국, 전석기, 최웅식 의원(11

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에서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자동차 연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만 규정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연료가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와 수소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2016. 12. 2일 상위법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천연가스와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여 개정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천연가스 및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추가함.(안 제3조제1항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: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,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,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본문의 "법 제51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"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.

개 정 아 혅 했 제3조(포상금의 지급대상) ① 서울특제3조(포상금의 지급대상) ① -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한다)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 고·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 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포상금은 위 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 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 하거나,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 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1. ~ 6. (생략) 7.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: 법 7.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수급 행위 : 법 제51조의2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, 법 제5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는 행위 제5호,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. ~ 10. (생략) 8. ~ 10. (현행과 같음) <부칙신설>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1항제7호의 개 정규정 중 본문의 "법 제51조의4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"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.

미첨부사유서(2호)

요 청 인 : 김창원 의원 담당 : 조도형 과장

이정수 팀장

이수아 예산분석관

접 수 일: 2021.03.31.

회 신 일 : 2021.04.01. 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제7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신설되는 포상금 지급대상 사유의 발생건수 등 현황 파악이 어려워 비용추계가 곤란
 - * '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'의 신고포상금액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[별표 2]에서 200,000원으로 정하고 있음

2. 미첚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- 안 제3조제1항제7호(포상금의 지급대상)에 따라,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재정소요 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발생건수 등의 현황자료가 없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정책조사팀장 이정수

분석관(주무관) 이수아

2 02-2180-7952

e-mail: sua8873@seoul.go.kr